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83	접수연월일	2018. 2. 14
청원인	주소	서울시 노원구 나들로	
	성명	박재홍	
소개의원	박양숙, 김기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 도시계획관리
건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도시계획관리		
<p>○ 마장축산물시장은 60년 전부터 형성된 서울시의 가장 오래된 축산물 전통시장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17.3.23일 개정되어 제조업체의 경우 제28조제3항너목의 규제에 따라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신축이 가능한데 현재 마장동 전통시장에 위치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p> <p>이러한 이유로 전통시장 내의 영세 상인들의 HACCP 기준인증을 위한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판로개척도 어려운 상황인 바, 서울시의회가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청원함.</p>			